



Creating the future, together Korean Tax Newsletter

2020년 3월

• 예규·판례

가. 미환류소득 산정 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액만을 의미함(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35, 2020.02.11)

▣ 예규 전문

[제목]

- 미환류소득 산정 시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환급세액 등의 귀속 사업연도

[요 지]

-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은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않는 것임

【회신】

- 「법인세법 시행령」 제 93 조 제 4 항 제 2 호 가목(2019.2.12. 대통령령 제 29529 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중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 56 조 제 1 항(2018.12.24.법률 제 16008 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따른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않는 것임.

■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제도의 미환류소득은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기업소득(=각 사업연도 소득+가산항목-차감항목) x 적용율(*) -
환류액[임금증가+투자금액(투자포함방식만)+상생협력지출금액]

(*) 투자포함방식은 15%, 투자제외방식은 65%

- 위 표의 기업소득을 구하기 위한 차감항목 중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 57 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액과 같은 법 제 15 조 제 2 항 제 2 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이 있습니다.
-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의 의미에 대하여 기존에 국세청에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대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액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납부한 법인세라는 입장, 즉 현금주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 ✓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과세되어 추징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 56 조제 2 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 93 조 제 4 항에 따른 기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 추징세액 및 가산세액이 포함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되는 것임** (법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02, 2018.05.24)
 - ✓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의 투자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경정청구를 하여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 해당 법인세 환급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93 조 제 4 항 제 2 호

가목(2019.2.12. 대통령령 제 29529 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전액 차감되는 것임(서면-2019-
법령해석법인-1198, 2019.11.20)

-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유권해석에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는 계산 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은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않도록 해석하며 “귀속주의” 적인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 동 유권해석은 구 법인세법(2019. 12. 31. 법률 제 1609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미환류세제에 대한 내용이지만, 조문구조가 동일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제도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인 귀속주의에 따르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거나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본래 귀속 사업연도의 기업소득에 반영하여 미환류세제를 계산해야 합니다.

**나. 해외지주회사의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에는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도 포함하여 계산함 (서면-2019-법령해석국조-2522,
2020.02.07)**

■ 예규 전문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이하 ‘甲법인’)은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홍콩에 지주회사인 자회사(이하 ‘A 법인’)를 두고 있으며, A 법인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18 개의 자회사(甲법인의 손회사)를 두고 있음.
- 甲법인이 홍콩에 설립한 A 법인은 국조법§18 의 2 의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주회사로 A 법인은 보유하던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면서 이익 발생

(질의내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18 조의 2【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에 따른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의 판정 시 “주식의 보유”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주식처분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 16099 호로 2019. 1. 1. 개정된 것) 제 18 조의 2 의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이하 해외지주회사)’에 관하여 같은 법률 시행령 제 36 조에 따른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은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 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한편,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해외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18 조의 2, 법률 제 16099 호로 2019. 1. 1. 개정된 것).
- 이때, **주된 사업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중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2 조).
-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주된 사업의 의미가 불분명한 바, 주식의 보유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는 주식 처분이익도 있다고 회신한 것입니다.
- 하지만 위 관련 규정을 보면, 주된 사업의 의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된 것으로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2 조에서 주된 사업의 의미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바, 규정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사용료소득은 실질적·경제적인 수익적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조심 2019 서 0753, 2020.02.13)

■ 시사점

- 조세심판원 및 과세관청에서는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 계약의 주체, 내용을 형식적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경제적으로 판단한 바, 향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계약시 계약 주체, 계약의 실질 내용, 계약이 실제 이행되는 소재지 등을 검토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징수사항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함(서면법령부가-2169, 2020.02.14)

▣ 예규전문

【질의】

(사실관계)

-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청기금”)은 중소기업 종합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 2018.9.28.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기업의 발명을 평가하는 용역(이하 “평가용역”)을 공급하고 기업으로부터 평가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 이를 위하여 2019.3.5.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로부터 발명의 평가업무를 부수업무로 승인받음.
- 신청기금은 평가목적에 따라 ① 신용보증·보증연계투자 목적과 ② 기업 자체활용 목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바
 - ①의 경우 기업이 ‘지식재산가치평가보증’을 신청하면 기업의 발명(지식재산등)을 평가하여 가치를 산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보증을 실시하는 것이며 ②는 보증과 관계없이 기업이 자체활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임.

(질의내용)

- 신용보증기금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기업에 발명의 평가용역을 공급하고 평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 「발명진흥법」 제 28 조에 따른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보증 및 보증연계투자업무(이하 “보증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해당 기업의 발명을 평가하고 평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26 조제 2 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업 자체활용 목적 등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은 같은 법 제 11 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해석

-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 26 조, 법률 제 16101 호로 2018. 12. 31. 개정된 것).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0 조, 대통령령 제 30397 호로 2020. 02. 11. 개정된 것).
- 기업의 발명을 평가하고 평가수수료를 받는 것이 기업의 신용보증 및 보증연계투자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면 부수업무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나, 별도의 용역으로 행해지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예규입니다.

Back to top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kr/about to learn more.

Deloitte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and related services. Our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286,0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 2020.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To no longer receive emails about this topic please send a return email to the sender with the word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